

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

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(수행기관) 운영 지원으로 유망 창업기업(보육기업) 발굴,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

□ 프로그램 개요

- (지원 내용)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
 - (액셀러레이터)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

< 액셀러레이터 지원항목 >

- (인건비)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
- (운영비) 유망기업 모집·선발, 교육·훈련, 멘토링, 자금지원, 투자IR 등 운영비
- (역량강화비) 해양수산 관련 특화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기관간 협업 등

- (창업기업) 초기자금, 교육·멘토링, 투자연계 등 창업 초기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

*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

< 창업기업 지원항목 >

- (자금지원) 기업별 초기 자금 지원
- (기업보육) 기업별 멘토링, 투자자매칭, 사업화 지원 등
- (투자유치)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

○ (지원규모)

- (액셀러레이터) 4개사, 기관별 2억 9천 5백만원 이내 지원
- (창업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 32개 내외

* 액셀러레이터 지원 금액 및 지원 창업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□ 프로그램 운영

- (엑셀러레이터 선발)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, 보육, 투자유치 지원을 수행할 **4개사 선발**(각 2.95억, 총 11.8억원 지원)
 - * (선정 절차) 자격검토(KIMST) → 서류평가(평가위원회) → 발표평가(평가위원회)
서류평가에서 2배수 선정, 단, 신청 건이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
 - ** (가점) '23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 사 해당 시 **가점 2점 부여**
 - *** (선정우대) '22년 최종평가 1순위 엑셀러레이터는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- (기업선발) 창업기획자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모집 및 선발

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(22.12.)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 5개 선도기술(붙임 참조) 중점 선발
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
- (선발 규모) 총 32개 팀 이상(엑셀러레이터 당 8개 팀 이상, 그 중 예비 창업자 2개 팀 의무 선발, 창업 3년 이내 기업 2개 팀 이상 선발)
 - * 평가 기준은 엑셀러레이터 내부 기준을 따르되, 최종선정은 전담기관 확정 필요
- (기업지원) 창업기업 진단을 통해 고용, 투자유치 등 기업별 성과지표 (KPI)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
 - (자금 지원)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과 협약체결 후, 90일 이내에 창업기업에 사업비의 25%(75백만원)을 초기 자금*으로 지급(직접·지분·연계투자자 별도)
 - * 초기 자금은 창업기업 별 차등 지급 가능하며(단, 지급액 상한 15백만원),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의 집행 적절성을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·감독하여야 함
 - (기업보육) 교육·멘토링, 시장검증, 판로지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특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 - * 보육대상 기업 중 해외진출·수출 희망 기업이 있을 경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능(단,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교부는 없음)
 - (직접투자) 엑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기업에게 직접 투자
 - * 엑셀러레이터별 총 60백만원 이상을 선발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(미이행 시 해당 금액을 사업비에서 환수)
 - (투자연계) IR 컨설팅,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 - * 보육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엑셀러레이터 별 데모데이 1회, 통합 데모데이 1회 개최

- (사후관리)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,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

* 보육기업 사후관리 후, 차년도 상반기에 전담기관에게 결과를 보고함

**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○ (공동협업)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

- 창업 관련 행사(창업설명회·상담회, 간담회 등) 지원, 투자유망 기업 발굴 지원, 상·하반기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교육 필수 참여 및 이수* 등

* 수행기관별 상하반기 최소 3명 이상의 인력(사업 참여인력 중) 교육이수 필수

○ (사업수행 실적보고)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수행내용 및 실적 보고

* 점검회의 개최 시,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석 원칙

○ (최종평가)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, 기업보육 내용, 기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, 전담기관 간의 소통·협업능력 등을 평가

- 평가결과 1순위 액셀러레이터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,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 선발

* 최종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, 심의를 통해 사업비 잔액 미지급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

□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○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

-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
-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(공동)대표여야 함
- ③ 상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* (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지정)
 -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 필수
 - 실무담당자는 액셀러레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참여율 50% 이상 필수
 - 타 사업 등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간 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시,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등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
-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창업기업 투자 경험 필수
-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·외 해양수산 유관 기관, 전문 VC,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
-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,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
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□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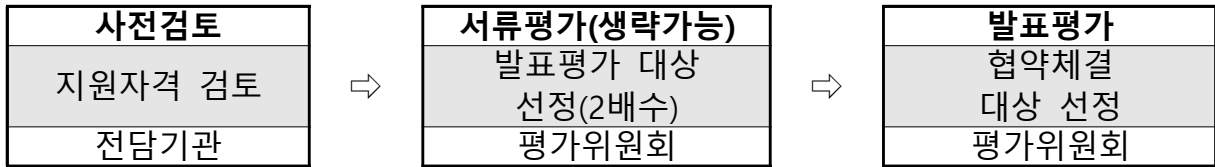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2023. 2. 9.(목) ~ 2. 28.(화)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- 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- *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함
- (신청서류) 별첨 참조

연번	신청 서류(필수 제출)	비고
①	지원신청서(별첨 참조)	작성 후 제출
②	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증빙서류
③	엑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	
④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
⑤	재무제표 (최근 3년, '20~'22년) 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'22년 재무제표 제출	
⑥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
⑦	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(학위, 경력 등)	
⑧	투자 실적 증빙자료(계약서 사본, 이체내역서, 주주명부 등)	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□ 액셀러레이터 선정 절차 및 기준

- (선정절차) 사전검토,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



* 신청 건이 선정 대상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가능

** 평가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, 동점 발생 시 수행기관 역량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
- (평가기준) 사업 목적 및 신산업분야 이해도,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

* 기업모집은 해양수산창업투자시스템을 통해 수행기관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(3~4월)

평가항목		세부 평가기준	배점(점)
서류평가	수행기관	- 재무상태 안정성 및 인력구성 적절성 - 액셀러레이팅 실적 및 보육공간·네트워크 우수성	35
	프로그램 수행계획	- 유망기업 모집·발굴·선정 계획의 구체성 -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발굴 계획 - 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타당성, 적합성, 현실성 - 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, 적합성	50
	역량강화	-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의 타당성 -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	15
	합계		100
평가항목		세부 평가기준	배점(점)
발표평가	수행기관	- 조직/참여인력(보유자격) 구성 등 조직·인력구성 적절성 - 보육·투자 실적 등 액셀러레이터 수행 성과 우수성 - 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·멘토 명단 구성의 전문성	30
	발굴 및 선정	- 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중심의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홍보·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 - 보육대상 기업 선정 계획의 적합성 및 공정성	20
	프로그램 수행계획	- 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도전성, 적합성 - 보육 기업 수,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관련 지표 등 평가 -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우수성 - 창업기업 교육·멘토링 계획의 구체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방안의 타당성	30
	성과관리 및 일반관리	- 성과관리 계획(후속 투자유치 계획 포함)의 적정성 - 초기투자 계획 및 후속투자 연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 - 일정, 산출물, 재무,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- 공간, 초기자금 매칭, 전체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- 사후관리 및 향후 연계 계획의 타당성	20
	합계		100

- (가점사항) '23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사가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

□ 추진절차

절 차	내 용	일 정
엑셀러레이터 모집공고 및 선정 ↓	• 엑셀러레이터 선정 - 서류평가(2배수 이내 선정), 발표평가를 통한 엑셀러레이터 최종 선정	1~3월
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↓	• 엑셀러레이터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	4~5월
프로그램 운영 ↓	•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• 창업설명회 개최(1회 이상) • 월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점검	5~10월
데모데이 ↓	• 보육기업 IR 및 투자검토 등 투자활동 지원 • 엑셀러레이터 별 데모데이 및 통합 데모데이 • 엑셀러레이터, 보육기업, 전담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	10~11월
최종평가	• 사업 최종평가 실시 -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보고 * 평가결과 1순위 엑셀러레이터 차년도 우선 선발 적용	12월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협약서 기재사항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은 수행기관(엑셀러레이터) 내부기준에 따르되, 평가계획과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초기자금지원(사업비)과는 별도로 보육기업에게 총 6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, 투자 의무금액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함

- 초기자금지원금(사업비 25%, 총 7천5백만원)을 미지원하거나, 지원받은 기업의 중도 포기 발생 시, 해당 금액을 불인정되며, 최종 사업지원금에서 환수 조치함
 - * 단, 중도 포기로 인한 기업 추가 선정 시 해당 기업에 한하여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집행 가능
-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(혹은 법인설립)을 했거나, 창업기업(또는 예비창업자)이 타인의 아이템 또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스타트업 및 해당 수행기관에 있음
- 선발 후, 중도 포기 기업이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이 발생할 경우,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,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 대상을 충원하여야 함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이메일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	김영진 연구원	02-3460-0374	kimbear@kimst.re.kr